

직장예비군부대 운영규정

- 제정 : 1999. 10. 1.
- 개정 : 2011. 6. 30.
- 개정 : 2015. 5. 13.
- 개정 : 2017. 8. 3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비군법 제3조의 2, 제5조(법률 제2017호(68.5.29) 및 동 시행령 제5조, 제13조와 대학 직장예비군 편성운영지침(문교부 81. 5. 12)에 의거 학생예비군이 학문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원과학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직장예비군대대 설치·조직·편성과 훈련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와 책임 한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제) 본교 예비군 대대는 총장 직속 독립기구로 설치·운영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교에 재학(직) 중인 교직원예비군, 학생예비군에게 적용한다.

제 2 장 임무 · 조직편성

제4조(임무) 본교에 편성된 예비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하에서 현역 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수요를 위한 동원에 대비
2. 매년 지시된 예비군 교육훈련 시간에 대한 의무 이행
3. 분기 1회 예비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 신상정보 및 훈련사항을 확인

제5조(예비군의 조직편성) ① 본교 직장예비군은 예비군법 제3조 제1항에 의거 예비군의 조직 대상자 중 본교에 재학(직) 중인 교직원예비군, 학생예비군 및 고용원예비군으로 편성한다.
② 중대, 소대, 분대는 학과별, 학년별로 편성 지휘체제를 유지한다.
③ 지휘관(자)은 대대장 추천에 따라 총장이 임명(연 1회)하되 학적 변동 시에는 교체 임명한다.
④ 학과 조교는 본교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예비군에 대한 연락체제를 유지하며 직장의 장을 대행한다(예비군교육훈련 제10조 “5-바”에 의거 소집통지서 전달자로 본다).

제6조(대원신고) ① 본교에 재학(직) 중인 학생예비군 및 교직원예비군은 입학(임용), 복학 허가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본교 직장예비군 대대에 예비군 보류원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7-1-9 직장예비군부대 운영규정

- ② 재학(직) 중 휴학(휴직), 제적, 졸업(퇴직), 졸업탈락 등의 학적변동이 있을 때와 거주지 이전이 있을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본교 직장예비군 대대에 학적변동사유 및 거주지 이전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학적과와 총무과는 재학 및 재직 중 학적변동 또는 퇴직 사항이 발생 시 학적변동 및 퇴직 7일 이내에 변동사항을 예비군 대대에 서면으로 통보할 의무를 갖는다.

제 3 장 예비군 교육훈련

- 제7조(교육훈련)** ① 학생예비군의 교육훈련은 당해 연도 교육훈련 지시(육본, 3군사령부, 지휘 관리부대)에 의거 반드시 교육훈련에 참석하여 의무 부과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② 학과 조교는 교육훈련 소집통지서(구두연락)를 받으면 지체 없이 대상자(학생)에게 연락할 책임을 진다(예비군교육훈련령 제10조 “5-바”에 의거 소집통지서 전달자로 본다).
 - ③ 교육훈련 개시 9일전까지 교육훈련 소집통지서(구두연락)를 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학과장 확인 후 서면으로 예비군 대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예비군 대대는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공고문을 작성하여 학과 및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본교 학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한다.

제 4 장 예비군부대 지원육성

- 제8조(지원육성)** ① 예비군법 제14조의 3,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9조, 대통령 훈령 제28조 제9조 규정에 따라 예비군의 육성, 지원을 위하여 본교 내 방위협의회를 설치·운영한다.
- ② 본교는 예비군 부대 및 예비군 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원한다.
 1. 예비군 부대 운영에 필요한 예산
 2. 교육훈련에 필요한 예산(수송, 중식비 일부, 강사료, 교보재 등)
 3. 예비군 정기 감사 수검에 필요한 제반사항

제 5 장 동원 훈련

- 제9조(동원)** ① 부분동원은 국가동원령 발령 절차에 준하여 시행한다.
- ② 병력동원 소집통지서는 병무청으로부터 접수하여 예비군 편성카드 기재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다.

③ 병력동원 소집통지서는 본 규정 제7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의거 교부되며, 병력동원 소집 통지서 수령증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예비군 대대에 제출한다.

제 6 장 벌 칙

제10조(벌칙) ① 예비군 교육훈련에 무단 불참한 자는 예비군법 제15조에 의거 당해 연도 지침에 따라 고발 조치한다.

② 예비군훈련 무단 불참자(2회 이상)와 예비군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된 자는 학과장에게 통보하여 학칙 시행세칙 제36조에 의거 학점 산정에 참고토록 조치한다.

제 7 장 보 칙

제11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예비군법 및 예비군 실무편람(국방부 2011.02.15.), 당해 연도 교육훈련지시(육본, 3군사령부, 지휘관리부대)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7-1-9 직장예비군부대 운영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